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Trade-Labor Linkage in FTAs of the US and EU

강 유 덕* Yoo-Duk Kang
고 보 민** Bo-Min Ko

| 목 차 |

I. 서론	V. 미국과 EU의 접근방식 비교
II.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VI. 결론
III. 미국의 FTA와 노동조항	참고문헌
IV. EU의 FTA와 노동조항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노동장(chapter)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관세철폐와 달리, 노동기준의 조율은 장기간에 걸친 제도변화 및 규제의 수렴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FTA를 추진함에 있어 위반 시 제소와 벌금부과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시켜왔고, 이에 반해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장은 대화 또는 협력에 기반을 둔 권고적 조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양측이 갖고 있는 FTA 추진의 목적, 국내법 및 운영체제와 같은 국내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국은 양측과 동시에 FTA를 발효시켰고, 한국기업의 해외노무관리가 점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제1저자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육전담초빙교수, 교신저자

중요해짐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무역-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이행을 살펴보면, 한국이 IL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에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관행이 미국식과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EU FTA는 이행과정에서 양측이 정부는 물론, NGO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지속적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과 EU의 노동규제로부터 끊임없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자유무역협정(FTA), 무역-노동기준 연계, ILO 핵심노동협약, 미국, 유럽연합(EU), 보호무역

I. 서론

무역-노동기준의 연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20세기 초 ILO 출범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헌장은 서문에서 ‘어느 한 국가가 인간적인 근로조건을 채택하는데 실패할 경우, 이는 다른 국가들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무역을 매개로 각국의 노동조건이 상호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 선진국-개도국 간 무역·투자확대는 무역-노동기준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확산시켰다. 특히 선진국의 고용불안 문제와 개도국에서의 노동착취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무역·투자 이슈에 노동권 보호문제를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노동조건 보호가 무역협상의 의제에 포함되는 이유는 인권보호라는 규범적 가치 외에도 공정경쟁을 위해 노동기준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Golub, 1997). 노동기준은 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발전수준과 사회적 경험 속에서 내생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러나 무역개방에 따라 무역장벽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노동기준에 따른 임금 및 노무관리 비용이 제품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기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저임금을 기초로 생산비용 상에 우위를 점하게 되며, 이로 인해 노동기준이 높은 국가가 국제무역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노동기준이 동반 하향화되는 이른바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OECD, 1990; UNCTAD, 1994). 반면에 다자무역체제에서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대립이다(Anuradha and Dutta, 2012). 개도국 입장에서 볼 경우 선진국이 주장하는 무역과 노동

기준의 연계는 보호무역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무역협상을 매개로 국내정책에 간섭하는 시도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ILO는 1998년 ‘근로자 기본권 선언’(이하 1998년 ILO 선언)을 채택하여 노동권과 관련된 4대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노동기준이 보호주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국가의 비교우위를 문제 삼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¹⁾ 무역-노동기준의 연계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에 WTO 체제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었으나, 주요국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다자무역규범으로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김홍률, 2001).

2000년대 이후 무역체제 하에서 나타난 가장 큰 흐름은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확산이다. WTO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 전 세계에 통보된 RTA의 누적 수는 625개이며, 이중 419개의 RTA가 발효 중이다.²⁾ RTA의 90%이상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며, FTA의 상당수는 양자 간에 체결된 협정이다. 선진국-개도국 간에 이루어지는 FTA의 경우 개도국은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반면, 선진국은 시장접근성의 획득 외에도 자국의 규제 및 기준을 상대국에 수용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³⁾ 이러한 의미에서 FTA의 확산은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양자협상 위주의 FTA에서는 일방(선진국)의 노동기준을 상대국(개도국)이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다자체제에서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국 중 양대 경제권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EU가 FTA를 통해 무역과 노동기준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본 협정을 체결한 후, 1993년에는 노동 및 환경에 관한 협정을 부속협정의 형태로 체결하였으며, 2000년 10월에 체결한 요르단과의 FTA에서부터는 협정문 본문에 별도의 노동 장(chapter)을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노동조건의 약화 시 무역재제까지 가능한 의무규정을 명시하면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강도 높은 노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EU는 FTA에 강력한 노동기준을 포함시키는 데에는 소극적이었으며, 상대국과의 협력증진을 통해 노동권 보호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EU는 포괄적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를 차츰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공식명칭은 ‘작업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과 그 후속조치(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이다. 동 선언에서 명시된 4대 핵심노동권은 다음과 같다. ①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②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금지, ③ 아동노동의 효과적 금지, ④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2)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검색일: 2016. 05. 18)

3) 이른바 ‘규제협력(Regulatory cooperation)’으로 지칭되는 이와 같은 전략은 EU의 통상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관한 EU의 입장에 대해서는 European Commission(2010, p. 7)을 참조할 것.

본 연구는 미국과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관련 조항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국제적 움직임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한국이 미국과 EU, 양측과 FTA를 발효시켰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미, 한·EU FTA 또한 비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양측과의 FTA 이행이 국내의 무역-노동 관련 이슈 및 노동규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가늠해 보도록 한다. 미국과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조항을 비교하는 연구는 ILO와 WTO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Ebert and Posthuma 2011; Anuradha and Dutta 2012; ILO 2015). 반면에 양측이 제3국과 체결한 새로운 FTA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추가연구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미국의 노동조항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진행된 바 있으나, EU의 노동조항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으며, 양측 FTA의 노동조항에 대한 비교연구 또한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무역-노동의 연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에 추가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론에 이은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주요 논의사항 및 선행연구, 그리고 최근 FTA의 노동기준에 관한 경향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미국의 기체결 FTA에 나타난 노동조항의 특징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EU의 FTA와 노동조항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5장에서는 양국 FTA의 노동조항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무역-노동기준 연계의 국제적 논의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경제적 측면에서의 논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간 논쟁이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입장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였다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무역-노동기준 간에 상호연관 관계, 후생의 극대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크게 ‘불공정 경쟁’과 ‘밑바닥으로의

4) 미국 FTA의 노동조항에 관한 대표적인 국내연구로는 배연재(2014)가 있다. 이 연구는 미국의 기체결 FTA에 포함된 노동조항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이행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한·미 FTA의 노동조항에 관한 연구로는 허재준(2007)과 김미영(2012)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반면에 EU의 기체결 FTA에 포함된 노동조항에 대한 국내연구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경주(race to the bottom)’에 대한 논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불공정 경쟁에 대한 논의는 무역에 관련된 국가들이 일정수준의 노동기준을 갖춰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은 그 생산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를 배경으로 노동권 보호수준이 낮은 국가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증가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갖추게 된다(Busse, 2002). 반면에 장기적으로는 근로조건 악화는 물론 사회발전의 정체현상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경쟁조건을 균일화하는 한편, 노동조건 악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 노동기준이 각국의 통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WTO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지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Elliott 1998; Turnell 2002; Aleo 2006). 이와 같은 견해는 윤리적 관점에서 제3국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려는 움직임 외에도 경제적 실익관점에서 선진국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반면에 낮은 노동기준이 해당 국가의 수출을 촉진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증적 차원에서 많은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Martin and Maskus, 2001; Aidt and Tzannatos, 2002).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개도국이 비숙련 노동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것은 경제발전 단계 상 하위에 위치해 있고, 비숙련 노동분야에서 풍부한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낮은 노동기준이 비교우위의 핵심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오히려 국제적 노동기준을 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선진국의 ‘감춰진 보호무역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Krugman 1994; Bhagwati 2001).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무역협정에 포함된 강력한 노동조건이 관련국의 노동권 증진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노동조건은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개도국의 생산성 및 소득수준 향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무역장벽 철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anagariya, 2001; Burtless, 2001; Stern and Terrell, 2003).

두 번째 논의는 국제무역이 노동기준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바, 국제적 노동기준의 수립을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경우 저임금과 동시에 노동기준이 낮으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동기준을 더욱 낮게 할 동기가 존재한다. 이는 생산비용 감축을 도모하는 다국적 기업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므로, 다국적 기업은 이를 활용할 동기가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기준에 대해 국제사회의 협조가 없을 경우 각국 간의 경쟁에 의해 노동기준이 하방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Anderson 1998; Chan and Ross 2003). 이 주장은 개도국과의 경쟁에 직면, 생산비용의 감축하거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선진국에서 주로 제기되었다. 반면에 국제무역의 증가가 오히려 개도국의 노동기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 견해는 앞서 개도국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가 노동기준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와 같은 맥락에 있는데, 국제무역의 확대를 그 매개체로 꼽는다. 국제무역의 증가는 경제 및 정치발전과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고, 선진규제와의 접촉효과, 고숙력 인적자원의 형성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기준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확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궁극적으로 정치발전에도 기여하여 노동권이 신장될 가능성이 크다(Davies and Vadamannatid, 2013). 한편 외국인 투자의 입지조건으로써 값싼 노동력이 갖는 역할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오히려 양질의 노동력과 유치국의 행정운영(governance) 수준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바, 유치국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무역확대를 위해 먼저 노동기준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Tsogas, 1999).

2.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무역-노동기준의 연계에 관한 논의가 다자무역체제 내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WTO 출범을 전후한 시기부터이다. WTO의 출범은 세계화 속에서 선진국에서 실업문제와 개도국에서의 열악한 노동문제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범세계적 개선요구가 나타난 시점과 일치한다. WTO 출범 초기부터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노동관련 이슈를 WTO의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주장은 선진국과 개도국, 노동계와 산업계, 그리고 학파 간에 있어 그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는 인도주의인지, 아니면 숨겨진 보호무역주의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무역재제까지 발동할 수 있는 노동조항의 포함은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WTO 각료회의를 중심으로 전개된 선진국-개도국 간의 갈등은 다음과 같다.⁵⁾ 1994년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 몇몇 선진국은 기본 노동권의 준수를 WTO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하며, 무역과 노동기준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할 작업반을 WTO 내에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개도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UN 특별총회 형식으로 1995년에 개최된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도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논의가 시도되었으나, 미국과 EU를 한편으로 한 선진국과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 간에 격심한 견해차이가 노출되었다. 이 회의는 4대 핵심노동기준(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차별금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선진국-개도국 간의 이견을 축소시키지는 못하였다. 동일한 양상은 1996년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노동기준과 무역과의 관계를 검토할 작업기구를 WTO 내에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은 EU와 캐나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클린턴 정부는 여러 이슈에 있어

5) 이하의 절은 한창훈(2000) pp. 50-57를 참조하였다.

보호무역적 태도를 보인 바 있었고, 이 주장은 거의 전 개도국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노동기준 문제는 ILO가 담당하여야 하며, 노동기준이 WTO 내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 각료회의 선언문은 무역과 노동조건의 연계에 관한 별도의 명시없이 원칙적인 사항과 이에 관한 ILO의 역할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동 선언문의 4항에서는 ‘노동기준을 보호무역주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며, 저임금 개도국의 비교우위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⁶⁾

이와 같은 선진국-개도국 간의 대립은 1999년 말 시애틀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도 계속되었다. 미국은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작업반을 WTO 내에 설치하는 종래의 입장을 반복하여 주장하였고, EU는 이보다는 다소 느슨한 ILO-WTO 간의 상설포럼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반면에 WTO 내의 개도국 그룹인 ‘77 그룹(Group 77)’은 WTO 내에서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동일한 현상은 2001년부터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에서도 계속되었고, 결국 무역-노동기준 연계는 의제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WTO 체제 내에서 논의된 무역-노동기준 연계는 입장차이로 인해 그 진전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동 이슈는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그 입장이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둘째, WTO 체제 내에서 노동관련 이슈가 가시적인 협상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점은 장기간 협상이 정체되어 온 WTO 체제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입장차이가 큰 양 진영이 대립할 경우 협상의 진전이 어렵고, 특히 대부분의 개도국이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의제로 포함시키는 것조차 어려웠던 것이다.

3. 최근의 무역협정과 노동관련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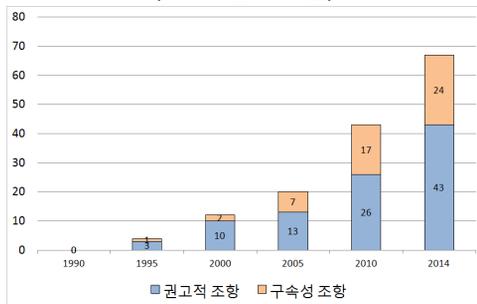
FTA 등 무역협정에 명시적인 노동규정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노동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은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체결되는 이른바 북-남(North-South) 형식으로 체결되어 왔다. ILO(2014)에 따르면 1990년 무역협정 중 노동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은 단 한 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2000년에는 12개, 2010년에는 43개로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총 67개의 RTA가 노동조항을 포함하고 있다.⁷⁾ 이는 FTA 등 RTA의 수가 1990년대 중반이후 증가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나, 어떠한 형식으로든 노동관련 조항을 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짐

6)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96_e/wtodec_e.htm (검색일: 2016.0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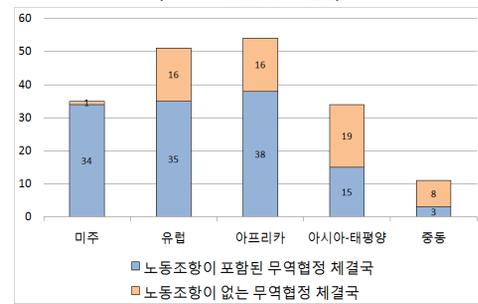
7) ILO(2014); Kraatz(2015), p. 4.

을 의미한다. ILO(2015)에 따르면 2005~2013년의 기간 중 WTO에 통보된 FTA 중 1/3은 노동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85개 ILO 회원국 중 60%의 국가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노동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⁸⁾ 주목할 점은 무역협정의 일방이 미국, EU인 North-South 방식의 FTA 뿐만 아니라 개도국 간(South-South)의 FTA에도 노동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개도국 간에 체결된 FTA 중 총 16개의 FTA가 노동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노동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정의 수 (WTO 통보 기준)
 〈그림 2〉 노동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정 체결국 수 (ILO 회원국 기준)



자료: ILO(2014); 재인용: Kraatz(2015), p. 4.



자료: ILO(2015), p. 20.

FTA에 포함된 노동조항은 크게 구속력을 갖춘 노동조항과 권고적 성격의 노동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FTA 중 40%는 구속성이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60%는 노동관련 조항을 언급하거나 노동권 보호에 대한 지지를 권고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전자가 위반 시 제소나 경제적 제재, 호혜조치의 중단 등을 활용한다면, 후자는 대화 및 협력, 모니터링 등을 노동조항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한다. 이후 상세히 분석하겠지만, FTA의 노동조항이 권고성/구속성으로 양분되는 이유는 미국의 FTA가 주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하는데 반해, EU의 FTA에 포함된 노동조항은 규범적이며,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양자 FTA의 쌍방이 모두 개도국인 경우에는 노동관련 조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노동권에 대한 광범위한 원칙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8) ILO(2015), p. 21.

Ⅲ. 미국의 FTA와 노동조항

1. 미국의 FTA 정책

미국은 1989년 캐나다와의 FTA를 발효시킨 이래, 1994년에는 동 FTA에 멕시코를 포함시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발효시켰고, 2000년대에는 주로 중남미 국가 또는 FTA에 적극적 입장을 보인 동아시아 일부 국가와 FTA를 추진하였다. 2016년 5월 기준 미국은 요르단, 싱가포르, 한국, 파나마 등의 국가와 총 14개의 FTA를 발효 중이다. 또한 2015년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국과 광역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타결하였고, EU와는 2013년 2월 이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을 추진 중이다(표 1. 참조).

〈표 1〉 미국의 FTA 현황

국가	종류	발효일
이스라엘	FTA	1985.08.19
NAFTA	FTA/EIA	1994.01.01
캐나다	-	1989.01.01
요르단	FTA/EIA	2001.12.17
싱가포르	FTA/EIA	2004.01.01
칠레	FTA/EIA	2004.01.01
호주	FTA/EIA	2005.01.01
모로코	FTA/EIA	2006.01.01
바레인	FTA/EIA	2006.08.01
중앙 아메리카	FTA/EIA	2006.03.01
엘살바도르(2006.03.01), 온두라스, 니카라과(2006.04.01), 과테말라(2006.07.01), 도미니카 공화국(2007.03.01), 코스타리카(2009.01.01)		
오만	FTA/EIA	2009.01.01
페루	FTA/EIA	2009.02.01
한국	FTA/EIA	2012.03.15
콜롬비아	FTA/EIA	2012.05.15
파나마	FTA/EIA	2012.10.31
타결 또는 협상 중인 FTA	TPP: 타결(2015.10.05) TTIP: 협상 중 (2013.02.13 ~ 현재)	

주: 1) FTA는 GATT 24조에 의거 체결된 상품부문의 FTA를 의미하며, 경제통합협정(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은 GATS 5조에 의해 체결되는 서비스 부문의 FTA를 의미함.

2) 미국-캐나다 FTA는 이후 NAFTA로 흡수됨.

자료: WTO, <http://rtais.wto.org/UI/PublicAllRTAList.aspx> (검색일: 2016.05.18).

2000년대 초까지 미국의 FTA 정책은 경쟁적 무역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에 의거,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이에 대한 돌파구 또는 압력으로써 양자 또는 광역 FTA를 활용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Deblock 2005). 반면에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차츰 다자간 협상에서 FTA로 무역협상의 우선순위를 변경시켜 왔으며, 최근 타결된 TPP와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체결한 FTA는 시장 접근성, 무역규범의 확산 외에도 그 내용이 상대국가의 상황과 미국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끔 실용적이라는 특징이 있다(Horn *et al.* 2009).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은 美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된 이후 2007년 5월 10일 의회와 행정부의 합의로 수립된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미국 민주당의 보호주의적인 정책성향이 드러난다. 동 정책은 통상정책의 일반 이슈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의 전제조건으로 핵심 근로기준,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 항만 보안, 투자, 그리고 노동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 근로기준(Core Labor Standards)의 경우 FTA 상대국들이 1998년 ILO(국제노동기구) 선언에 규정된 5개의 핵심 기본노동권, 즉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철폐 금지,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제거를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 유지해야 한다. 노동 관련 규정으로는 이외에도 정부조달에 있어서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 하여금 정부 조달 참여 기업에게 5개의 핵심 노동기준 및 수용 가능한 임금 조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더 나아가 미 의회와 행정부는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노동자 및 지역에 대해 교육 훈련, 의료 연금 혜택, 소득지원 등에서 기존의 무역조정지원(TAA) 시스템을 뛰어넘는 수준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인 '전략적 노동자 지원 및 훈련(SWAT: Strategic Worker Assistance and Training)' 프로그램을 수립 집행할 것을 규정했다.

신통상정책은 상대국에 대한 공격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한편, 무역자유화로부터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이중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무역상대국들에게 전제조건으로 높은 노동 환경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산업과 노동자를 경쟁압력으로부터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美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노조의 강력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수입경쟁 제한 및 무역조정지원 강화라는 특징이 향후 더욱 강조된다. 미국은 이러한 신통상정책을 통해 앞으로 미국의 무역자유화에 있어 노동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결과에 대한 고려가 통상정책의 중심이 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2. 미국의 기체결 FTA와 노동조항

미국은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본 협정을 체결한 이래 1993년에는 노동 및 환경에 관한 협정을 부속협정의 형태로 체결하였으며, 2000년 10월에 체결한 요르단과의 FTA에서부터는 협정문 본문에 별도의 노동 장(chapter)을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노동조건의 악화 시 무역재제까지 가능한 의무규정을 명시하면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강도 높은 노동기준을 FTA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노동기준을 위반하는 상대국 기업이 있을 경우에 제소를 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으로의 수출을 불허하겠다는 강행규정이다.

미국이 기체결한 FTA 노동협정문의 주요 조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⁹⁾ 첫째로 '무역·투자증진을 위한 노동법 보호수준 저하 금지' 조항을 보면 NAFTA의 노동부속협정인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러나 미국-요르단 FTA에는 간략하나마 협정문 내 독립적인 chapter로 노동 분야가 규정되어 있다. 그 이후의 FTA에 있어서도 협정문의 문구에 차이는 있으나, 내용은 동일하다. 두 번째로 '분쟁해결절차'를 보면 NAALC에는 중재패널(Arbitral Panel)의 설치를 명시하고, 최대벌과금도 최초 1년 2천만 불, 이후 당사국간 무역규모의 0.007%로 정하였다.¹⁰⁾ 미국-요르단 FTA에서는 분쟁해결패널(Dispute Settlement Panel) 규정을 넣었으며, 적절한 무역제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후의 싱가포르, 호주, 모로코, 바레인, 오만 등 과의 FTA에서는 '정부간 협의→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분쟁해결패널(Dispute Settlement Panel)'의 3단계로 분쟁해결절차를 세분화 하였다. 이때 연간 최대 1천 5백만불의 벌과금을 설정했으며 벌과금 미납부시 FTA 혜택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넣었다. 이후 칠레, 중앙 아메리카, 콜롬비아, 페루 등 과도 유사한 구조로 '정부간 협의→위원회(Commission)→중재패널(Arbitral Panel)'의 3단계 분쟁해결절차를 두었다.

한·미 FTA에서 노동의 장인 제19장은 노동분야 만을 규율하는 독립된 장으로, 기본 노동권, 노동 협력 및 노동 협의 등 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FTA 19장 2조에 따르면 1998년 ILO선언이 정하고 있는 5개의 기본노동권을 법 및 관행에서 채택하고 유지해야 한다.¹¹⁾ 한·미 FTA에도 미국의 신통상정책의 영향을 받아 일반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무역제제도 가능하다. 한편 19장 8조에서는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동등성 확보를 위하여 협정문 대상 노동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및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로 한정하였다.

9) 고용노동부 FTA 노동분야 자료실 참조

(<http://www.moel.go.kr/policyinfo/fta/view.jsp?cate=2&sec=5>) (검색일: 2016. 3. 10)

10) 이때 벌과금 미납부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FTA 혜택 정지하도록 하였다.

11) ① 결사의 자유, ②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③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철폐, ④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⑤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3. 미국의 FTA에 나타난 노동조항의 특징

미국이 초기에 체결한 이스라엘(1985년), 캐나다(1988년)와의 FTA에는 노동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양 국가가 모두 선진국인 바, 쟁점화시킬 수 있는 노동 이슈가 적었고, 이스라엘과의 FTA의 경우 안보적 성격이 강했던 데에 있다. 반면에 멕시코를 포함하는 NAFTA를 기점으로 미국은 FTA에 노동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NAFTA는 협정의 본문에 별도의 노동 조항을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부속협정인 북미노동협력 협정(NAALC: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을 체결하여 노동관련 사안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FTA 본문에 ILO 선언 등 국제적인 노동기준이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12월에 발효된 요르단과의 FTA에서 부터이다.

특히 2007년 5월 미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합의된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with America)은 기존의 통상이슈 외에 다양한 노동, 환경 등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FTA에 상대국에게 요구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로 인해 신통상정책 이후 체결된 미국의 FTA는 무역·노동의 연계조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강제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신통상정책 이전에 비준된 미국의 FTA는 당사국이 노동법을 집행과정에서 자원배분상의 재량권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우 노동법 집행이 미비하더라도 제재로 이행하기 어려웠다(허재준, 2007. 3). 반면에 신통상정책 이후에 발효된 FTA들은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시킴으로써 무역제재 또한 가능해 졌고, 이후 체결된 미국의 FTA는 모두 강제성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과거의 FTA에서는 1998년의 ILO 선언이 권고적 차원에서 언급되는데 반해, 신통상정책 이후에는 의무규정으로 그 효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IV. EU의 FTA와 노동조항

1. EU의 FTA 정책

EU의 기체결 FTA 중 현재 발효 중인 FTA는 WTO 등록을 기준으로 총 36개이다.¹²⁾ 이 FTA들은 발효연도 및 포괄범위가 상이하나, 상대국에 따라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발칸반도의 동유럽 국가와 체결한 제후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다. 이 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의 양허 등 무역협정을 포함하고 있는

12) 2016년 5월 기준

나, EU 근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해당 국가들이 잠재적인 EU 가입후보국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성격이 짙다. 두 번째 그룹은 북아프리카 및 중동의 지중해 연안국과 체결한 FTA이다. EU는 1995년부터 바르셀로나 프로세스(Baselona Process)에 의거, 지중해 연안국들과 유럽-지중해 파트너십(Euro-Mediterranean Partnership)의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양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무역·투자 확대의 경제적 동기 외에도 근린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바, 외교 및 개발정책과 관련이 깊다.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ACP) 국가들과 체결한 FTA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세 번째 그룹은 원거리의 역외국과 체결한 FTA로 2000년대 초에 체결한 남아공, 칠레, 멕시코,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체결한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과의 FTA이다. 세 번째 그룹은 FTA 상대국이 지리적으로 원거리 국가라는 점 외에도, 경제적 동기에 의한 무역협정이란 점에서 다른 두 그룹의 FTA와는 차별된다. 특히 EU는 2006년 9월 포괄적 FTA 전략인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 Initiative)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EU는 FTA 상대국을 선정하는데 있어 시장잠재력과 개방수준, 경쟁국과의 FTA 추진 여부 등 경제적 동기를 우선시하였다.¹³⁾

〈표 2〉 EU의 FTA 현황

	국가	종류	발효일
그룹 1	보스니아	FTA	2008.7.1
	몰도바	FTA/EIA	2014.9.1
	알바니아	FTA/EIA	2006.12.1(G), 2009.4.1(S)
	세르비아	FTA/EIA	2010.2.1(G), 2013.9.1(S)
	몬테네그로	FTA/EIA	2008.1.1(G), 2010.5.1(S)
	마케도니아	FTA/EIA	2001.6.1(G), 2004.4.1(S)
그룹 2	튀니지	FTA	1998.3.1
	모로코	FTA	2000.3.1
	요르단	FTA	2002.5.1
	레바논	FTA	2003.3.1
	이집트	FTA	2004.6.1
	알제리	FTA	2005.9.1
	이스라엘	FTA	2000.6.1
	Cariforum	FTA/EIA	2008.11.1
	코프디부아	FTA	2009.1.1
	파푸아뉴기니/피지	FTA	2009.12.20
	동남아프리카(ESA)	FTA	2012.5.14
카메룬	FTA	2014.8.4	
그룹 3	남아공	FTA	2000.1.1
	칠레	FTA/EIA	2003.2.1(G), 2005.3.1(S)
	멕시코	FTA/EIA	2000.7.1(G),

13) 특히 2010년 이후에 체결된 FTA는 이른바 신세대 FTA(New generation FTA)로 지칭된다.

			2004.4.1(S)
	한국	FTA/EIA	2011.7.1
	콜롬비아/페루	FTA/EIA	2013.3.1
	중남아메리카	FTA/EIA	2013.8.1
타결/협상완 료	싱가포르	FTA/EIA	협상완료(2014.10.17)
	캐나다	FTA/EIA	협상완료(2014.9.26)
	베트남	FTA/EIA	타결(2015년 8월)
협상 중 (협상개시)	인도(2007.6), 말레이시아(2010.10), 태국(2013.3), 일본(2013.4), 미국(2013.7), MERCOSUR(2010.5월 협상 재개)		

주: FTA는 GATT 24조에 의거 체결된 상품부문의 FTA를 의미하며, 경제통합협정(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는 GATS 5조에 의해 체결되는 서비스 부문의 FTA를 의미함.

자료: WTO, <http://rtais.wto.org/UI/PublicAllRTAList.aspx>(검색일: 2015.11.20).

2. EU의 기체결 FTA와 노동조항

EU가 FTA에 노동관련 조항을 포함시키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¹⁴⁾ 그러나 2000년대 초까지 노동조항은 인권준수를 강조하는 사회조항(Social chapter) 또는 협력의 일부로 FTA 협정문에 언급되는 정도였으며, 독립된 장(chapter)으로서의 위치를 갖지는 못하였다. 반면에 2011년에 발효된 한·EU FTA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제목의 별도의 장을 통해 노동관련 조항을 다루고 있다. 미국의 FTA가 노동과 환경에 관해 각각 별도의 장을 포함하는데 반해, EU의 FTA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묶는 것이 특징이다.

EU의 FTA에 포함된 노동조항은 FTA 별로 다소 상이한데, 그 이유는 EU의 FTA가 점차 적극적, 포괄적 FTA의 성격을 띠게 된 점과 관련이 깊다. 먼저 EU가 2000년대 초에 체결한 지중해 연안국과의 FTA는 명시적인 노동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가령, 모로코,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알제리 등과 체결한 FTA는 낮은 수준의 무역양허에 집중되어 있으며, FTA 상대국의 노동조건이나, 국제협약의 준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노동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2000년 발효)과의 제후협정에 서부터이다. 본 협정의 제63조는 고용 관련 사회문제에 있어 양측이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의 형식으로 제도화된 위원회가 아닌, 전문가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남아공(2000년 발효)과 체결한 FTA는 서문에 처음으로 다양한 노동이슈에 대해 ILO의 기본협약을 준수할 것임을 명시하고, 본문에서는 노사관계를 포함한 사회이슈에 대해 대화할 것임(86조)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강제노동 철폐,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철폐

14) Häberli, Jansen and Monteiro(2012), p. 8.

폐, 아동노동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¹⁵⁾ 이후 칠레와 체결한 FTA(2003년 발효)에서는 처음으로 협정문 본문에서 ILO의 핵심협약을 언급하고 있다. 협정문의 제44조는 고용창출 및 기본 사회권의 존중에 있어 ILO의 핵심협약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구체적인 이행수단에 관한 언급은 없다. 주목할 점은 EU의 FTA 중 처음으로 양측 시민사회 간의 정규적인 대화를 촉진할 것을 언급하고(43조), 노동관련 이슈의 대화에 있어 양측의 시민사회를 참여시킬 것을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2000년대 중반 이전에 체결된 EU의 FTA는 점차 노동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나, 규정의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EU의 FTA가 점차 포괄적인 노동조항을 포함하게 된 것은 2008년 카리브해 국가들과 체결한 EU-Cariforum FTA부터이다. 동 FTA의 서문은 ILO 핵심협약에 관한 언급과 함께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EU의 기존 FTA와는 차별화된다. 첫째, 동 협정문은 EU의 FTA 중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이슈에 관한 별도의 장을 두고 있다. 제5장 사회적 측면(Social Aspects)에서는 ILO 핵심협약의 준수 외에도 '직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191조). 둘째, 동 FTA는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 사회 및 노동규범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193조). 이 조항은 Cariforum 국가들이 자국의 사회발전에서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사회, 노동기준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192조)과 절충을 이룬다. 셋째, 양측은 노동조항의 준수와 관련된 정책집행에 있어서 ILO에 공식적인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될 경우 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이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보고서의 의견은 구속성을 갖지 않는다.

EU의 FTA가 정형화된 노동장을 갖추게 된 것은 2011년에 발효된 한국과의 FTA에서부터이다. 동 FTA의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무역과 관련된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13.4조는 '다자간 노동 기준과 협정'을 통해 IL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채택된 협약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ILO 8개 핵심협약 중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나, 본 조항은 '그 밖의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ILO 8개 핵심협약이 현재 한국의 일괄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적용될 것임을 의미한다.¹⁶⁾

15) EU-이스라엘 제휴협정은 제63조에서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문제(social problems of post-industrial societies)에 관해 대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EU-남아공 FTA의 경우 '아파르트하이트 이후의 사회문제(social problems of post-apartheid society)'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협력의제를 망라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인종차별 철폐 이후 남아공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6) 김상만(2014), p. 233.

그 외에도 EU의 다른 기체결 FTA에 비해 변화된 점은 ① FTA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평가(13.10조), ② 양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설(13.12조), ③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개설(13.13조), ④ 협의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EU와 한국은 FTA 발효 이후 매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양측의 NGO 등 사회대표로 구성된 시민사회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권고적 성격만을 가질 뿐, 구속력은 없다.

3. EU의 FTA에 나타난 노동조항의 특징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장은 이후 EU가 콜롬비아 및 페루, 중앙아메리카, 싱가포르, 캐나다, 몰도바와 체결한 FTA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¹⁷⁾ 이를 감안할 때, 한·EU FTA 이후 EU의 FTA에 포함된 노동조항은 점차 정형화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FTA가 무역-노동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노동 이슈에 관한 강행규정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EU의 FTA는 국제협약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위반 시 제재규정은 없으며, 당사국 정부 및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강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EU가 체결한 다수의 FTA는 개발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이로 인해 구속력이 약한 협력 규정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중해연안국 및 동유럽 국가들과 체결된 제후협정의 경우 협력에 있어 EU가 상대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기본 원칙을 나열하거나, 규범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국제관계에 있어 대화를 강조하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다자규범의 정립을 모색하는 EU의 전통적인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항과 관련된 EU의 입장은 무역협정 상대국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권 증진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있다. Horn *et al.* (2009)는 EU와 미국 간의 FTA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EU의 경우 FTA를 통해 WTO 체제의 강화를 의식하는데 반해, 미국은 양자적 접근을 통해 실익을 강조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셋째, 다수 회원국의 연합체인 EU의 특성상 회원국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반

17) EU가 한국, 싱가포르, 몰도바와 체결한 FTA에서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장은 장의 번호(Chapter 13)까지 값을 정도로 유사하며, 초안이 공개된 EU-캐나다 FTA도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콜롬비아 및 페루, 중앙아메리카와 체결한 FTA도 노동과 환경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하에 같이 다루고 있으며, 내용상 한·EU FTA 제13장과 유사하다.

영하는 정치적 타협을 거칠 수밖에 없는 바, 이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노동관련 이슈의 경우 EU 공동체의 정책영역이 아닌, 개별 회원국의 영역인 바, FTA 협상 시 통상정책의 틀 안에서 노동관련 이슈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넷째, FTA에 시민사회 포럼의 운영을 포함시킨 이유는 EU 운영체제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U 운영체제의 특성 상 통상정책과 관련된 실무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통상총국이 담당한다. 이로 인해 통상정책은 회원국 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나 있으며, 이는 '민주성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¹⁸⁾ 이를 보완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통상정책의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노력해 왔는데, FTA의 이행에 시민사회 포럼을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V. 미국과 EU의 접근방식 비교

1. 기체결 FTA에 나타난 노동조항의 차이와 원인

미국과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관련 조항은 양측 모두 1998년 ILO의 '근로자 기본권 선언'을 협정문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를 포함시키고, 양자, 다자 채널을 통한 노동기준 제고, 독립적 전문가 패널의 운영방식 등에 있어 유사점이 있다. 반면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이 체결한 FTA의 노동조항이 위반 시 무역제재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강제성을 갖추고 있는 반면, EU의 FTA는 상대국과의 대화 또는 협력을 통한 노동권 증진에 초점을 두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주체에 대해 강제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EU의 FTA가 노동관련 조항에 있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양측의 기체결 FTA와 통상정책 전반을 감안할 때, 세 가지 배경을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FTA 정책은 실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EU의 FTA는 개발지원 정책과 경제적 목적이 혼합되어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은 GATT/WTO 체제에서도 노동 관련 이슈를 다자간 무역협상에 포함시킬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 왔으며, 이 요구는 개도국의 반대에 막혀 번번히 무산되어 왔다. 따라서 다자

18) Meunier(2005), p. 188.

체제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양자간 FTA 추진 시 협정문에 강력한 무역-노동 연계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실리적 관점에서 당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반면에 2000년대 중반까지 EU의 FTA 정책방향은 WTO 체제를 의식하면서 이상적인 다자규범의 정립을 모색하는 경향이 강했고, 대부분의 경우 개발정책과 연계되어 있었다. EU의 FTA는 그 수에 있어 그 수가 미국보다 3배가 더 많고, 앞서 <표 3>을 통해 분류한 바와 같이 서로 성격이 다른 FTA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는 FTA 상대국인 개도국의 노동기준 위반사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기 보다는 구속력이 약한 정책대화나 협력을 통해 노동기준 전반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둘째, EU 회원국은 ILO의 8개 핵심노동협약을 모두 비준한데 반해, 미국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관련 2개 협약만 비준한 상황이다.¹⁹⁾ 이로 인해 EU는 FTA의 노동관련 조항을 ILO의 핵심노동협약에 근거하여 구성하는 경향을 보이며, 한국, 캐나다와 체결한 FTA에서는 ILO의 '양질의 일자리 아젠다(Decent Work Agenda)'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국내법과 상충소지가 있음에 따라 핵심노동협약의 일부만 비준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FTA 추진 시 ILO 협약의 준용은 기본권 선언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그 외에는 노동기준과 관련된 미국의 통상법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단일화 된 연방국가와 달리 EU는 연방국가와 회원국 간의 연합체의 중간형태를 갖고 있다. 통상부문의 권한은 EU 공동체로 이전되어 있으나, 노동이 포함되는 내무·사법 분야는 각 회원국 정부의 소관이다. 따라서 무역-노동의 연계에 있어 강제성있는 노동조항을 FTA에 도입하는 것은 EU 운영체제를 고려할 때 EU-회원국 차원의 권한배분관계를 재조정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이 약해질 수 있다. 노동에 사법 관련 규정을 넣으면, 모든 국가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파급효과

양측의 이러한 차이를 감안할 때, 무역-노동기준 연계조항은 상대국의 노동법규와 관행, 기업의 노무관리에 있어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FTA의 발효기간이 아직 짧고, 노동기준과 관련된 상대국의 변화가 반드시 FTA 이행에 따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19) ILO의 8개 핵심노동협약은 다음과 같다. 차별금지: ① 남녀 동등보수 협약(제100호), ② 고용·직업상 차별금지 협약(제111호), 아동노동금지: ③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제138호), ④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제182호), 강제노동금지: 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⑥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결사의 자유: ⑦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⑧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이 중 미국은 노동권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국내법과의 충돌관계로 인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제182호)'과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만 인준하였다.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지금까지의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2004년 칠레와 체결한 FTA에서부터는 상대국의 노동관련 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사업과 일정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과 체결한 FTA 하에서의 노동관련 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하여 지원규모를 크게 늘린바 있는데, 중앙아메리카-도미니크 공화국과 체결한 FTA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캄보디아의 국제노동기준 준수에 부응하여 섬유부문의 쿼터 인센티브를 재공한 미-캄보디아 섬유협정은 무역-노동기준의 연계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기준을 개선시키는데 성공한 사례로 손꼽힌다(임석준 2013). 반면에 상대적으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 호주와의 FTA에서는 노동관련 협력활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한미 FTA에서는 정부간 정보 교류, 시민사회와의 공개회의를 통한 상호소통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미국의 FTA가 위반 시 제소와 벌금부과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운영상에서는 정부간 정보 교류를 통해 사전적 해결을 시도한 후, 구속조항은 최후의 보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TPP를 통해 미국의 FTA 네트워크가 동남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는 바, 한미 FTA와 무관하게 한국기업의 해외생산기지(동남아)에서의 노무관리가 점차 미국의 FTA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FTA에 포함된 노동조항은 한-EU FTA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속에 환경과 함께 포함된 이래 이후 추진된 모든 FTA에서 정형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FTA 상대국의 정부 및 관련기관,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대화를 강조하는 EU의 방식을 감안할 때, EU의 무역-노동기준 연계조항은 구속력은 없으나, 협력 및 대화를 통해 꾸준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 회원국은 4대 핵심노동기준을 모두 비준하였으며, 통상정책이 EU의 대외정책의 일부임을 감안할 때, 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방식의 통상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VI. 결론

본 연구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2000년대 이후 양자 FTA 등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기준을 살펴보았다. 특히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미국과 EU의 기체결 FTA의 노동조항을 비교분석하였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FTA에서 무역-노동기준의 연계는 과거와 같은 구속력 있는 노동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0

월에 타결된 TPP에서는 1998년 ILO 선언에 명시된 노동 기본권을 각 당사국이 국내 법령으로 채택할 것을 명시하였고,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에 대한 위반 시에는 기존 미국의 양자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소를 통한 무역제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TPP의 회원국 수가 12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TPP의 발효는 아시아-태평양 내의 무역-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PP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아시아의 노동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도국에 노동기준 강화를 위한 외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²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외자유치를 기반으로 제조업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공급사슬이 얽혀있다는 점에서 투자 및 노무관리의 관행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무역-노동기준 연계는 구속력은 약하나, 점차 정형화된 모델을 바탕으로 EU와 회원국 간에 협력을 제도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립되고 있다. 한국과의 FTA 이후 EU는 거의 유사한 형태와 내용의 노동조항을 FTA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 정책은 EU가 개정을 추진 중인 다양한 기체결 제후협정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FTA 추진에 있어 EU 방식의 독자적인 틀(template)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EU의 FTA 협상이 선진국(미국, 일본) 및 개도국(말레이시아, 인도)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바, 상대국의 노동기준 및 발전 정도에 따라 다소 차별화될 소지는 있다.

FTA를 통해 나타난 미국과 EU의 무역-노동기준 연계 정책은 한국정부의 통상정책과 기업의 해외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첫째, 통상정책의 측면에서 한·미,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과 깊은 관련이 있다.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관세철폐와 달리, 노동기준의 조율은 장기기간에 걸친 제도변화 및 규제 수렴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노동관련 분야에서 미국과 EU와의 노동협력은 장기적으로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요한 분야이다. 우선 한·미 FTA의 이행을 살펴보면, 한국이 IL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에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관행이 미국식과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EU FTA는 이행과정에서 양측이 정부 는 물론, NGO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대화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구속력은 없으나, 지속적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령 EU는 규모가 특정기준을 상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EU 측은 매년 개최되는 한-EU 시민사회 대화를 통해 한국측도 동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²¹⁾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20) The Atlantic, "The TPP's Uneven Attempt at Labor Protection," January 22, 2016.
<http://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6/01/tpp-mexico-labor-rights/426501> (검색일: 2016.05.15).

FTA를 통해 미국과 EU의 노동규제에 끊임없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국과 EU는 FTA의 외연을 한국기업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현지생산은 현지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 및 EU로의 재수출까지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해당국가가 미국, 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이 FTA의 노동기준은 한국기업의 노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서 언급한 TPP가 단적인 예이다. 가령 많은 한국기업들은 현재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베트남에 있어 1위의 투자국이 되었다. 한국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주요 원인은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 및 상대적으로 수월한 노무관리 비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반면에 TPP의 발효를 위해 베트남은 노동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 되며, 현지진출 한국기업이 노동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베트남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베트남 현지 생산의 상당수가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EU는 2015년 8월 베트남과 FTA를 타결하였고, 법률검토를 마친 후 곧 비준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으로서는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노동기준을 파악하고, 양측이 FTA 상대국과 추진하는 노동관련 협력이슈와 추진 추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맞춰 해외 생산공장에서의 노무관리를 적응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21) EU는 다음의 조건을 강화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① 근로자 수 500명 이상, ② 자산총계 2,000만 유로 초과, ③ 수익 4,000만 유로 이상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FTA 노동분야 자료실

<http://www.moel.go.kr/policyinfo/fta/view.jsp?cate=2&sec=5> (검색일: 2016. 3. 10)

김미영(2012), “한미자유무역협정 노동조항의 내용과 해석”, 「노동법학」, 제43호, pp.97-137.

김상만(2014),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과 FTA 협정상의 노동 조항(노동 장)에 대한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7권 2호, pp.219-243.

김홍률(2001), “노동의 무역연계에 관한 미국의 정책변화”, 「KIEP 세계경제」 2011년 3월 호, pp.14-23.

박지은·이혜연·명진호·서은영·정혜선(2015),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 20개 경제권(73개국)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연구원 「IT Trade Focus」, 14-3.

배연재(2014), “FTA를 통한 노동권 보호: 미국 FTA의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117호. 법무부.

임석준(2013), “국제통상을 통한 노동기준 제고. - ILO와 캄보디아의 ‘더 좋은 공장’ 사례 연구”, 「국제관계연구」, 제18권 1호, pp. 165-198.

허재준(2007), 「한-미 FTA 노동협정체결에 따른 협정문 이행방안 연구」,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한창훈(2000), 「무역과 국제노동기준 - 뉴라운드 이슈의 역사적·이론적 고찰」, 한국노동연구원.

Aggarwal, Vinod K.(2013), “US free trade agreements and linkages”, *International Negotiation*, Vol.18 No.1, pp.89-110.

Aleo, Michael E(2006), “Comparative Advantage and Economic Reform: Making Labor Provisions Trade Agreements Practical and Effective”, *Bepress Legal Series*, Paper No. 958.

Anderson, Kym(1998), “Environmental and Labor Standards: What Role for the WTO”, in Anne O. Krueger, ed. *The WTO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icago Press.

Anuradha R.V. and Nimisha Singh Dutta(2012), “Trade and Labour under the WTO and FTAs”, *Centre for WTO Studies*.

Aidt, Toke and Zafiris Tzannatos(2002), “Un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Economic

- effects in a global environment”, *Directions in Development Series*,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 Bhagwati, Jagdish(2001), Free Trade and Labour, *Financial Times* (August 29).
- Burtless, Gary(2001), “Workers’ Rights: Labor standards and global trade”,Brookings Institute. <http://www.brookings.edu/research/articles/2001/09/fall-globaleconomics-burtless> (검색일: 2015. 11. 7)
- Busse, Matthias(2002), “Do Labor Standards Affect Comparative Advantage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30, No.11, pp.1921-1932.
- Chan, Anita and Robert J. S. Ross(2003), “Racing to the Bottom: International Trade without a Soical Clause”, *Third World Quarterly*, Vol.24 No.6. pp.1011-1028.
- Davies, Ronald B. and Krishna Chaitanya Vadlamannati(2013), “A race to the bottom in labor standards?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103 July, pp.1-14.
- Deblock Christian(2005), “Les Etats-Unis et la liberalisation de l’investissement”, in Michele Roux ed. *Globalisation et pouvoir des entreprises*, Montreal: Athena Editions.
- Elliott, Kimberly Ann(1998), “International Labor and Trade: What Should Be Done?” in Jeffrey J. Schott ed. *Launching New Global Trade Talks: An Action Agenda*, Special Report 12.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European Commission(2010),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 Trade Policy as a Core Component of the EU’s 2020 Strategy*, COM(2010) 612.
- Golub, Stephen S.(1997), “Are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Needed to Prevent Social Dumping?” *Finance & Development*, December pp.20-23.
- Häberli, Christian, Marion Jansen and José-Antonio Monteiro(2012),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Domestic Labour Market Regulation”, *Employment Working Paper* No. 120,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Horn, Henrik, Petros C. Mavroidis and André Sapir(2009), “Beyond the WTO? An anatomy of EU and U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Bruegel Blue Print*.
-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2015), *Soical Dimensions of Free Trade Agreement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2014), “Presentation for EESC Round Table on Labour Rights and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n TTIP”,Brussels (November 12).
- Kraatz, Susanne(2015),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 and Labour”, *Briefing*, European Parliament.
- Krugman, Paul(1994), “Does Third World Growth Hurt First World Prosperity?”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https://hbr.org/1994/07/does-third-world-growth-hurt-first-world-prosperity> (검색일: 2015. 11. 7)
- Martin, W., Maskus, K. E.(2001), “Core Labour Standards and competitiveness : Implications for global trade policy”,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9 No.2, pp.317-328.
- Meunier, Sophie(2005), *Trading Voices: The European Un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Negotiatio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1990), *Labor market Policies for the 1990s*.
- Panagariya, Arvind(2001), “Labor Standards and Trade Sanctions: Right End Wrong Mean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Towards An Agenda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Labor Markets”, January 15-16, 2001, East-West Center, Hawaii.
- Stern, Robert M. and Katherine Terrell, 2003, “Labor Standards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search Seminar in International Economics, Discussion Paper No. 499.
- Tsogas, George(1999), “Labour Standards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n Assessment of the Argum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10 No.2, pp.351-375.
- Turnell, Sean(2002), “Core Labour Standards and the WTO”, *The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 Vol.13 No.1, pp.105-126.
- UNCTAD(1994), *World Investment 1994: Transnational Corporations, Employment and the Workplace* (executive summary).
- WTO, <http://rtais.wto.org/UI/PublicAllRTAList.aspx> (검색일: 2015. 11. 20)

Comparative Analysis of Trade-Labor Linkage in FTAs of the US and EU

Yoo-Duk Kang

Bo-min Ko

Abstract

This study reviews international discussions about the trade-labor linkage and examines the labor chapters of FTAs enforced by the US and the EU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Since early 1990s, starting from the NAFTA, the US has included forceable labor provisions in its FTAs and this trend continues to the TPP which was concluded in October 2015. On the other hand, the EU's labor provisions in its FTAs have been composed of promotional elements on labor rights based on cooperations and dialogues. These different features of labor provisions in the US and European FTAs are mainly due to the motives of the FTAs of the US and the EU respectively as well as their domestic situations with regards to domestic law and institutional set-ups. The coordination of labor provisions involves a long-term institutional as well as regulatory convergence which triggers not only economic but also social changes, compared to a relatively short-term effect of tariff elimination. For Korea which has been a FTA partner country both with the US and the EU, it is significant to keep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labor provisions in mind, particularly in the process of its implementation.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Korea-US FTA, it might be problematic if Korean law and its regulatory practice on labor-management relations do not comply with that of the US. The Korea-EU FTA case can also have an indirect impact on Korea's labor laws since it stipulates in its provisions that both parties should have discussions not only within each government but also with the civil communities including NGOs. Thus, Korea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true meaning in labor provisions of both FTAs in order to promote its firms to be equipped with the right labor-management system in their operations abroad.

<Key Words> Free Trade Agreement(FTA), Trade-Labor Linkage, ILO, Core Labor Standards, US, EU, Protectionism